

# 정착지원 제도개선 방안

2004. 7. 23

통 일 부  
(사회문화교류국)

# 목 차

I. 검토 배경 .....	1
1. 북한이탈주민 입국 규모와 성향의 변화	
2. 정착지원 제도 개요	
II. 개선방향 .....	3
III. 분야별 개선방안 .....	5
1. 청소년 사회적응교육	
2. 초기 정착 기반	
가. 정착금	
나. 주거 지원	
3. 사회안전망(생계급여)	
4. 취업·취학 지원	
가. 취업 지원	
나. 취학 지원	
5. 거주지 보호	
IV. 조치 계획 .....	11

# I. 검토 배경

## 1. 북한이탈주민 입국 규모와 성향의 변화

- 탈북 규모와 성향, 이에 대한 정부정책의 방향은 시대상황을 반영하며 변화
- 90년대 초반까지(매년 10명 이내)
  - 군인, 자수간첩 등 사상 또는 개인 문제로 귀순
  - 정부는 체제경쟁 차원에서 이들을 귀순용사로 우대(국가보훈처 담당)
- 90년대 중반부터(매년 수십 내지 수백명)
  - 식량난에 따른 집단 탈북, 제3국 불법체류 한계와 재입북시 처벌우려로 남한행 선택
  - 정부는 이들을 사회소외계층의 일부로 취급(보건복지부 담당)
- 최근의 경향(매년 1,000명 이상)
  -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처음부터 남한행을 목적으로 가족을 동반하여 탈북하는 층이 증가
  - \* 가족단위 입국자 : '90년~'93년 전무 → '94년 19% → '95년 31% → '03년 44%
  - 정부는 이들의 사회정착을 남북한 사회통합의 시험대로 인식, 전반적 통일구도하에 접근(통일부 담당)
- ※ 향후 입국규모가 연간 수천명 수준에 이르는 상황과 이들의 조기 지역사회정착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사회 실정에 밝은 지방정부와 민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할 필요

## 2. 정착지원 제도 개요

### ○ 정책방향

- 남한행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전원 수용
-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
- 탈북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 병행

### ○ 주요 정착지원 제도

- 체계적인 사회적응교육 실시(하나원 설립)
- 초기 정착기반 제공(정착금, 임대주택)
- 사회안전망의 특례와 취업·취학상 우대
- 개인별 보호담당관 지정(거주지, 신분, 취업)

### ○ 정착지원제도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,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보완

- 북한이탈주민 규모·성향의 변화에 맞춘 제도 보완
- 자립·자활 능력을 저해하는 사회안전망상의 특례 폐지
- 취학·취업을 실질적으로 돕는 교육과정과 인센티브제도 시행

## II. 개선방향

- 현 제도의 전반적인 틀은 유지하되,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
- 입국자의 연령층 다양화에 따라 대상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
  - 탈북청소년들의 사전적응교육을 위한 특성화학교 설립 추진
-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착금, 주거 등 기반의 보완
  - 정착금의 전체수준은 유지하면서 기본금은 축소하고 자립·자활 노력 및 의지를 제고하는 장려금 신설
  - 임대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지원 확대
- 자립·자활 의욕을 저해하는 특례는 축소, 이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는 강화
  - 생계급여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
  - 자립·자활 노력에 따른 장려금제 및 취업보호제 실시
  - 기능대학 등 취업으로 연결되는 교육지원 확대
- 거주지에서의 실질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역할 강화
  - 정착도우미제 도입, 신변보호방식 개선, 지역협의회 활성화

## 〈 정착지원 제도개선안(요약) 〉

구 분	현 황	문 제 점	개 선 방 안
청소년 사회 적응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회적응교육 2개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탈북청소년 제도권 교육 부적응</li> <li>- 하나원내 교육으로는 미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탈북청소년 특성화 학교 설립</li> <li>○ 교육기간 연장방안 강구</li> </ul>
초기 정착 기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착금 지급</li> <li>- 기본금 160배</li> <li>- 가산금 40배</li> <li>○ 영구임대주택 제공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착금과 자립·자활 노력의 연계 부족</li> <li>○ 영구임대주택 건설 중단으로 주거알선 애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착금에 인센티브 도입</li> <li>- 기본금 하향(100배)</li> <li>- 장려금 신설(50배)</li> <li>- 가산금 상향(50배)</li> <li>○ 국민임대주택 지원</li> </ul>
사회 안전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생계급여를 일반인보다 1단계 상향 지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립·자활 의지 저해</li> <li>- 취업 기피 등 도덕적 해이 발생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인과 동등 적용</li> </ul>
취업 · 취학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업훈련·취업 알선</li> <li>○ 고용지원금 지급</li> <li>○ 대학입학 특례 및 지원기간 불분명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업훈련 및 취업 의지가 상대적으로 저조</li> <li>○ 고용지원금 편법 수급</li> <li>○ 고학력 선호 및 대학중도포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업훈련 및 취업에 따른 장려금제 신설</li> <li>○ 고용지원금 편법수혜자에 대한 제재</li> <li>○ 대학지원기간 제한</li> <li>- 지원가능대학 범위 확대</li> </ul>
거주지 보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변보호(경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업무과중에 따른 실질적인 역할 미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변보호 방식 개선</li> <li>○ 정착도우미제 도입</li> </ul>

### Ⅲ. 분야별 개선방안

#### 1. 청소년 사회적응교육

##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교육은 탈북청소년이 제도권 교육에 편입하여 적응하기에는 기간 부족
  - \* 현재 탈북청소년을 위해 하나원내 하나들학교를 운영(2개월)
- 재북시 무학자이거나 학교중퇴자인 학력결손 비율이 14~20세 중·고 학령기 학생의 90%
  - \* '03.12.31 현재 탈북청소년 416명중 370명
  - 이들 대부분이 제도권 교육인 정규학교에서 부적응 상태
  - \* 중도 탈락율이 남한 일반학생의 10배 정도인 13.7%

##### □ 개선방안

- 제도권 교육으로 편입되기 전에 일정기간(6개월~2년 정도) 사전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탈북청소년 대상 특성화학교 설립
- 동 특성화학교는 ①학력결손 보충 및 적응지원을 통한 제도권 편입 지원, ②제도권 편입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프로그램, ③무연고 탈북청소년을 성년시까지 보호, ④적응이 부진한 既사회편입 청소년에 대한 재교육 기회 제공 등의 기능 수행
- 전문성과 열의를 가진 민간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시설 및 교육 운영 등을 지원
  - ※ 현행 2개월인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의 기간 연장방안을 강구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교육을 강화

## 2. 초기 정착 기반

### 가. 정착금

#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초기 정착지원금으로 정착금과 임대보증금 지급
  - 정착금은 1인 세대주에 약 2,800만원, 2인부터 부양가족 1인 증가시마다 약 800만원 추가 지급
  - \*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총 정착금은 2인세대시 4,555만원(5년간 분할 지급)
- 현행 정착금제도는 자립·자활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급
  - 사회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취업의욕 저해

#### □ 개선방안

- 전체 지원수준은 유지하되, 기본금은 하향하고 자립·자활을 촉진하는 장려금은 신설(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개정사항)
  - 취업능력을 상실한 노령자,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가산금은 상향
    - 기본금 : 월최저임금액 160배 → 100배(하향)
    - 가산금 : 월최저임금액 40배 → 50배(상향)
    - 장려금 : 월최저임금액 0배 → 50배(신설)
  - \* 장려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취업지원 부분 참조

#### < 제도개선에 따른 정착금 지급액(예시) >

(단위 : 만원)

가족수	개선 전	개선 후	비고
1인	3,590	2,000 ~ 3,560	* 장애인, 고령자 등에 대한 가산금은 약 1.5배 증액
2인	4,555	2,900 ~ 6,020	
3인	5,511	3,300 ~ 6,420	
4인	6,466	3,700 ~ 6,820	

## 나. 주거 지원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모든 북한이탈주민의 세대별로 영구임대주택을 알선
  - 이와 별도로 임대보증금을 실소요액과 관련없이 2인세대까지 750만원 지급
  - \* '03년 809세대, '04.6 현재 543세대 알선('97이후 북한이탈주민이 전국 공공임대주택 총 28만호중 2,765호로 약 1% 점유)
- 건교부는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중단하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('03~'12)을 추진중
  -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영구임대주택알선에 애로, 국민임대주택도 포함할 필요

### □ 개선방안

- 주거지원은 정착을 위한 기초 생활에 필수적임을 감안
  - 현행 영구임대주택 외에 국민임대주택까지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(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개정사항)
- 이와 함께 거주지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촉진·지원하기 위해
  - 영구임대주택의 임의해약 제한(거주지보호담당관과 공동명의로 계약)
  - 국민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주거지원금 상향 지원
  - \* 단, 실제 지급은 거주지배정 후 해당지역 임대보증금만 지급, 기준금액과 지급액의 차액은 주택변경 등 사유 발생시 또는 거주지보호기간 종료시 지급
  - 영구임대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 주택교환 인정

### 3. 사회안전망(생계급여)

#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우리 사회안전망에 따른 생계급여에 있어 현재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일반영세민보다 1단계 우대 지급
  - \* 1인 가구시 일반영세민 32만원, 북한이탈주민 54만원
- 북한이탈주민은 특례 적용된 생계급여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취업에 소극적
  - 특히, '00년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시행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현실화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·자활 의지를 저해

#### □ 개선방안

- '05년부터 일반영세민과 동일기준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지급

### 4. 취업·취학 지원

#### 가. 취업 지원

#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직업훈련이 단순히 훈련수당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취업과의 연계가 미흡
  - 컴퓨터, 요리 등 단순 생활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에 치중
    - \* '98~'02 컴퓨터·요리 관련 직업훈련 비율이 58.9%
- 직업훈련, 자격증 취득 및 장기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미비

○ 취업시에도 잦은 이직·전직 등 불안정한 취업 상태

- \* '00~'03 고용지원금 수급 대상자중 약 32%가 이직 경험이 있으며, 이직·전직 근로자의 평균재직기간은 5.8개월에 불과

## □ 개선방안

○ 정착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직업훈련·취업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는 장려금제도 신설(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개정사항)

- 직업훈련, 자격취득, 취업 장려금으로 구분 지급

- \* 직업훈련 장려금 : 노동부가 예시 직종의 직업훈련을 이수한 경우 지급
- \* 자격취득 장려금 : 직업훈련 이수자가 1년 과정이나 기능대학, 우선선정 직종의 관련 자격을 취득한 경우 지급
- \* 취업 장려금 : 취업 후 동일 직장에 일정기간(1년)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

○ 편법적인 고용지원금 수급을 막기 위해 취업실태 자료제출을 고용주에게 요구, 불이행시 일시 지급 정지(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개정사항)

## 나. 취학 지원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취업이 용이하거나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송통신대학, 산업대학, 기술대학은 연령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

- 이와 유사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기능대학, 직업전문학교는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아 산학연계가 다소 미흡한 상태

- \* 일반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 교육지원 대상은 현재 35세 이하로 제한

○ 과잉 교육지원으로 학력에 맞지 않는 고학력을 선호하는 현상이나 중도포기·휴학 등 부적응 사례 발생

## □ 개선방안

- 기능대학, 직업전문학교를 연령제한없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으로 시행령에 명시(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개정사항)
  - \* 기능대학 :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2년제 대학(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)
  - \* 직업전문학교 : 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,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(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)
- 대학의 교육지원기간을 거주지보호기간(5년)내 또는 고등학교 졸업후 5년내로 설정(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 개정사항)

## 5. 거주지 보호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증가함에 따라 신변보호(경찰), 거주지 보호(지자체), 취업보호(고용안정센터) 담당관의 업무가 과중
  - 특히 신변보호담당관은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생활 애로사항 등 민원해결업무까지 수행
  - \* 전체 보안경찰의 약 40%가 신변보호업무를 담당(최고 1인당 27명 담당)

### □ 개선방안

#### < 신변보호 방식 개선 >

- 경찰의 신병인수 및 신변보호업무를 특수대상으로 한정하고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수준을 완화
  - 일반대상에 대한 신병인수를 민간단체 정착도우미가 담당하여 신변보호와 정착도우미 역할을 분리

### < 정착도우미제 도입 >

- 전국조직을 갖춘 민간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편입후 초기 정착생활을 도와주는 정착도우미제 도입
  - \* 정착도우미의 역할 : 하나원에서 거주지 편입시 신병인수부터 시작하여 초기 6개월간 정착을 위한 제반 안내, 편의 제공
-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 전면 확대 추진

## IV. 조치 계획

-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
  - 그간 관계부처 의견협의(6회), 민간전문가 등 의견 수렴(7회)
  - 탈대협 개최, 제도개선안 심의·확정(7.23)
  - 입법예고, 규제개혁위원회·법제처 심사(8월)
  - 차관회의·국무회의(11월)
  - 내년('05년)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□